#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전현희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6699

발의연월일: 2024. 12. 19.

발 의 자:전현희·한준호·김동아

박지원 · 진성준 · 서미화

김영환 · 박성준 · 이학영

이정문 • 윤종군 • 황운하

김남희 의원(13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서는 2020년 개정을 통하여 주택 임대차 계약의 경우 신고의무를 부여하고, 신고의 접수가 완료된 때에는 「주택임대차보호법」상 확정일자를 부여한 것으로 보고 있음.

그런데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의 경우 신고의무가 없어 정확한 임대 차 시세정보가 부재하고 이에 임차인과 임대인 간 대등한 위치에서 임대조건 협상이 어렵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에 대하여도 신고를 의무화함으로써 임대차 관계에 대한 정보를 확충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문제를 해소하고, 신고가 접수된 경우 「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」상확정일자를 부여하도록 하여 임차인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(안 제6조의6부터 제6조의9까지 신설 등).

법률 제 호

#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장의3(제6조의6부터 제6조의9까지)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#### 제2장의3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의 신고

- 제6조의6(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의 신고) ① 임대차계약당사자는 상가 건물(「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」 제2조제1항에 따른 상가건물을 말 하며, 상가건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에 대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보증금 또는 차임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 대차 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상가건물 소재지를 관할하는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. 다만, 임대차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등인 경우에는 국가등이 신고하여야 한다.
  - ② 제1항에 따른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의 신고는 임차 현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적용한다.
  -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차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으로 신고할

수 있다.

- ④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지체 없이 발급하여야 한다.
- ⑤ 신고관청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사무에 대한 해당 권한의 일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·면·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
- ⑥ 제1항,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 및 신고필증 발급의 절차 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.
- 제6조의7(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) ① 임대차계약 당사자는 제6조의6에 따라 신고한 후 해당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, 차임 등 임대차 가격이 변경되거나 임대차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변경 또는 해제가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신고관 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. 다만, 임대차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등인 경우에는 국가등이 신고하여야 한다.
  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차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으로 신고할수 있다.
  -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지체 없이 발급하여야 한다.
  - ④ 신고관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사무에 대한 해당 권한 의 일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·면·동

- 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
-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신고 및 신고필증 발급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.
- 제6조의8(상가건물 임대차 계약 신고에 대한 준용규정) ①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 신고의 금지행위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.
  - ②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 신고 내용의 검증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.
  - ③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 신고 내용의 조사 등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.
- 제6조의9(다른 법률에 따른 신고 등의 의제) ① 제6조의6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「부가가치세법」 제8조, 「소득세법」 제168조 또는 「법인세법」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.
  - ② 제6조의6 또는 제6조의7에 따른 신고의 접수를 완료한 때에는 「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」 제4조제1항에 따른 확정일자를 부여한 것으로 본다(임대차계약서가 제출된 경우로 한정한다). 이 경우 신고관청은 상가건물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 신고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.

제25조의2제1항제1호의4 중 "제6조의2 또는 제6조의3"을 "제6조의2, 제6조의3, 제6조의6 또는 제6조의7"로, "계약의"를 "계약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의"로 한다.

제28조제5항제3호 중 "제6조의2 또는 제6조의3"을 "제6조의2, 제6조의 3, 제6조의6 또는 제6조의7"로 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의 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) 제6조의6 및 제6조의7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을 체결 또는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&lt;신 설&gt;</u>	제2장의3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
	의 신고
<u>&lt;신 설&gt;</u>	제6조의6(상가건물 임대차 계약
	의 신고) ① 임대차계약당사자
	는 상가건물(「상가건물 임대
	차보호법」 제2조제1항에 따른
	<u> 상가건물을 말하며, 상가건물을</u>
	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
	다. 이하 같다)에 대하여 대통
	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
	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
	우 그 보증금 또는 차임 등 국
	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
	임대차 계약의 체결일부터 30
	일 이내에 상가건물 소재지를
	관할하는 신고관청에 공동으로
	신고하여야 한다. 다만, 임대차
	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등
	인 경우에는 국가등이 신고하
	여야 한다.
	② 제1항에 따른 상가건물 임
	대차 계약의 신고는 임차 현황
	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

정하는 지역에 적용한다.

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차 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 으로 신고할 수 있다.

④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

- 신고관청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지체 없이 발급하여야 한다.
  ⑤ 신고관청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사무에 대한 해당 권한의 일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・면・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
- ⑥ 제1항,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 및 신고필증 발급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.

제6조의7(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) ① 임 대차계약당사자는 제6조의6에 따라 신고한 후 해당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, 차임 등 임대차 가격이 변경되거나 임

<신 설>

대차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변경 또는 해제가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. 다만, 임대차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등인 경우에는 국가등이 신고하여야 한다.

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차 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 으로 신고할 수 있다.
-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그 신고 내용을 확 인한 후 신고인에게 신고필증 을 지체 없이 발급하여야 한다. ④ 신고관청은 제1항부터 제3 항까지에 따른 사무에 대한 해 당 권한의 일부를 그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・면・동장 또는 출장소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
-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신고 및 신고필증 발급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.

<신 설>

<신 설>

- 제6조의8(상가건물 임대차 계약 신고에 대한 준용규정) ① 상 가건물 임대차 계약 신고의 금 지행위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 용한다.
  - ②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 신고 내용의 검증에 관하여는 제5조 를 준용한다.
  - ③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 신고 내용의 조사 등에 관하여는 제 6조를 준용한다.
- 제6조의9(다른 법률에 따른 신고등의 의제) ① 제6조의6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「부가가치세법」 제8조, 「소득세법」 제168조 또는 「법인세법」 제111 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의 신고를 한것으로 본다.
  - ② 제6조의6 또는 제6조의7에 따른 신고의 접수를 완료한 때에는 「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」 제4조제1항에 따른 확정일자를 부여한 것으로 본다(임대차계약서가 제출된 경우로

제25조의2(신고포상금의 지급) ①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관계 행정기관이나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- 1. ~ 1의3. (생략)
- 1의4. <u>제6조의2 또는 제6조의3</u>을 위반하여 주택 임대차 <u>계</u>약의 보증금·차임 등 계약금액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
- 2. · 3. (생략)
- ②·③ (생 략)
- 제28조(과태료) ① ~ ④ (생략)
  -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한정한다). 이 경우 신고관청은
상가건물의 소재지 관할 세무
서장에 신고 사실을 통보하여
<u>야 한다.</u>
제25조의2(신고포상금의 지급) ①
<u>.</u>
1. ~ 1의3. (현행과 같음)
1의4. <u>제6조의2,</u> 제6조의3, 제 <u>6</u>
조의6 또는 제6조의7
계약 또는
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의
2. · 3. (현행과 같음)
②・③ (현행과 같음)
제28조(과태료) ① ~ ④ (현행과
같음)
⑤

- 1. 2. (생략)
- 3. <u>제6조의2 또는 제6조의3</u>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(공동신고를 거부한 자를 포함한다) 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
- ⑥ (생 략)

1. • 2. (현행과 같음)
3. <u>제6조의2, 제6조의3, 제6조의</u>
<u>6 또는 제6조의7</u>
⑥ (현행과 같음)